**고용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음 –

**【제1조】 (목 적)**

이 약정은 갑이 을을 갑의 회사에 촉탁으로 위촉 발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발령기간)**

위촉 발령기간은 . . . 부터 . . . 까지 만 년으로 한다. 갑, 을간의 합의에 의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갑의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본 계 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3조】 (임 금)**

임금은 월 금 원으로 정하고 기타의 임금 조건은 갑회사의 임금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위촉 발령 조건)**

을의 위촉 발령 조건은 갑회사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을은 갑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약정기간중 해촉)**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갑은 을을 해촉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못한다.

1. 갑이 을회사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갑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때

3. 을이 불법행위로 형사 입건이 되거나 처벌을 받은 때

4. 을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명령을 받은 때

5. 을의 건강이 본 계약에 의한 근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갑이 인정하는 때

**【제6조】 (손해배상)**

을이 과실등으로 본 계약상의 업무 또는 본계약 업무이외의 행위로 갑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을은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은 갑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인)

을 주소

성명 (인)

을의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 **Từ mới:**

고용계약서 Hợp đồng lao động

발령함다 Công bố

합의하다 Thỏa thuận

단축하다 Rút ngắn

임금규정 Quy ước tiền lương

의하다 Dựa vào

복종하다 Phục tùng

위반하다 Vi phạm

불법행위 Hành vi bất hợp pháp

파산신고 Tuyên bố phá sản

인정하다 Thừa nhận

손해배상하다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